

축산계열화사업 성과와 과제: 육계산업을 중심으로

우 병 준 연구 위원
김 형 진 연구 위원

연구 담당

우병준 연구위원
김형진 연구원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제2~4장 집필

머 리 말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시장개방과 FTA 확대에 예상되는 축산업에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의 확대를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축산업 계열화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육계, 오리, 양돈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계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가소득 안정과 축산업의 외양 발전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 이외에 계열업체와 계약농가의 불평등한 계약관계에서 비롯한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정비와 법률 제정을 통해 축산계열화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육계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축산계열화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의 성과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농가와 관련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15.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세균

요 약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입법 배경하에서 관련 입법 이후 제도의 성숙여부를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진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법률적 정의 등을 통해 계열화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육계계열화사업의 발전 과정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대 순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축산계열화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고시 등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전체 도계 마릿수에서 상위 10위까지의 계열화사업자 도계 마릿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0.4%에 달하고 있다. 육계 시장의 계열화업체 시장 집중도의 경우 CR₃은 36%, CR₅는 50.5%, CR₈은 64.7%이며 과거 10년간 연평균 시장집중도 증가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시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수치도 계열화업체의 육계부문 시장집중도 증가세가 3%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육계시장에서 상위권의 계열화업체에 의한 시장 과점화 현상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농가 조사 결과 2014년 기준 농가당 평균 사육비 정산금액은 1회당 2,360만 원, 각종 비용을 제한 실소득은 1회당 1,214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평균 출하횟수 5.1회를 적용하면 연평균 실소득은 6,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열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업체변경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병아리 품질’,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 ‘평가방식’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도 계

열업체와의 계약에서 농가가 가지는 불만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열화사업에 따른 성과로는 먼저 계열농가의 경우 육계 생산지수가 2000년 203.5에서 2013년 294.0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여 비계열화 육계농가보다 생산성 증가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3월 양계협회와 계열업체가 공동으로 자율적인 ‘육용 종계 감축사업’을 실시하여 육계 산지가격을 9.8% 상승시켜 농가소득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계열화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사육비 정산기간 준수’, ‘사료 품질’, ‘병아리 품질’, ‘입추 간격’ 등의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문 응답이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농가와 업체 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 결과 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 관계가 서로 대등하고 신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표준계약서의 빠른 보급과 적용 확대’, ‘사육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강화’,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계열업체와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의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감안하여 정부의 사업평가 방식에서 계열화사업 달성률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농가 소득안정 달성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새로운 평가 지표로 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Performance and Emerging Issues of Vertical Integration Policy in the Livestock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in 201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a law-abidingness of poultry industry after the legislation. This study also pursues drawing a task for a successful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policy.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summarizes a concept and history of a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in Korea. The keystone of the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and related regulations are reviewed in the study.

This study shows that top 10 poultry packers’ slaughtering volume occupied 70.4 percent of total domestic poultry slaughtering in 2014. This study estimated the Korean poultry market concentration rate, and its annual growth rate is less than 2 percent during last 10 years. The estimated CR3, CR5, and CR8 are 36%, 50.5%, and 64.7% each. In addition, estimated HHI shows that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Korean poultry market is less than 3 percent. All those outcomes confirm that the Korean poultry market is not a perfectly oligopoly market. The becoming of oligopoly market is currently underway but the competition between high-ranked packers is getting deepened.

After introducing the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policy, the poultry productivity index increased from 203.5 in 2000 to 294 in 2013. Especially contracted farms show highly increased outcome compared to non-contracted farms. Farmers replied to the survey that the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positively affects several rearing contract related issues.

The survey result from 94 poultry farms shows that farms’ annual number of breeding is about 5 times and average commission is about 23,600 thousand won for a time. The main reasons of farmers’ changing contractor are replied as “quality of chick”, “the amounts of commission”, and “commission evaluation system.” These replies mean farmers still feel disadvantage by packers after introducing the “law of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in 2013.

This study realizes the main task for improving livestock industry integration policy is forming the mutual trust between farmers and packers in rearing contract. To meet this end, several policy improvements are necessary such as “prompt introducing and adopting use of standard form contract”, “forming and strengthening the farmer-council toward contractors or packers”, and “monitoring illegal activities of packers.” The U.S.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 is also a good example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farms and packers towards better partnership. Introducing a better standard, such as productivity measure or efficiency measure, to analyze a performance of the related policy is another key to achieve better industry structure.

Researchers: Woo Byung-joon, Kim Hyung-jin

Research period: 2014. 12. ~ 2015. 2.

E-mail address: bjwoo@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2
- 3. 연구 내용과 방법 3

제2장 육계산업 현황과 구조

- 1. 육계산업 현황 5
- 2. 육계산업 구조 10

제3장 육계계열화사업 도입과 현황

- 1. 육계계열화사업 도입 과정 18
- 2. 육계계열화사업 현황 25

제4장 계열화사업 문제점과 성과

- 1. 계열화사업 문제점 30
- 2. 계열화사업 성과 41
- 3. 계열화사업 관련 법률 제정 효과 45

제5장 계열화사업 발전 과제

1. 발전을 위한 기본 과제	56
2. 발전 방안 검토	59
부록: 육계농가 설문조사표	68
참고 문헌	77

표 차례

제2장

표 2- 1.	닭고기 수급	8
표 2- 2.	국가별 닭고기 수입 동향	9
표 2- 3.	원종계 수입 현황(2014년 기준)	12
표 2- 4.	도계장별 도계 마릿수 현황(2014년 기준)	16
표 2- 5.	닭고기 수급 추이	17

제3장

표 3- 1.	육계계열화 발전 과정	21
표 3- 2.	육계계열업체 계열화 진행 정도	25
표 3- 3.	주요 계열업체 도계 실적(2014년)	26
표 3- 4.	육계계열화업체의 시장 집중도(CR)	27
표 3- 5.	육계계열화업체의 시장 집중도(HHI)	28

제4장

표 4- 1.	육계계열화에 대한 농가 만족도 조사 결과(2010년)	34
표 4- 2.	설문조사 농가 계사 현황	36
표 4- 3.	설문조사 농가 사육규모 현황	36
표 4- 4.	설문 답변 농가의 보험 가입 현황	37
표 4- 5.	설문 답변 농가의 소독조 설치 현황	37
표 4- 6.	육계 출하 시 1회 평균 발생한 추가 비용	38
표 4- 7.	과거 계열업체 변경한 경우 그 이유	39
표 4- 8.	향후 계열업체 변경 희망 이유	40
표 4- 9.	육성률 변화 추이	42

표 4-10.	사육일수 변화 추이	42
표 4-11.	출하체중 변화 추이	42
표 4-12.	사료요구량 변화 추이	42
표 4-13.	일당 증체량 변화 추이	42
표 4-14.	육계 생산지수 변화 추이	43
표 4-15.	육용 종계 감축사업에 따른 육계 도계 마릿수 감소 효과(2013)	44
표 4-16.	육용 종계 감축사업에 따른 총 도계 마릿수 감소 효과(2013)	44
표 4-17.	육용 종계 감축사업에 따른 육계 산지가격 상승 효과(2013)	45
표 4-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도	46
표 4-19.	사육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부	46
표 4-20.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계약 여부	46
표 4-21.	계열업체와의 계약 중 항목별 만족도	47
표 4-22.	계열업체와의 계약 중 항목별 만족도	48
표 4-23.	법률 도입 이후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50
표 4-24.	법률 도입 이후 표준계약서 적용 증가 여부	50
표 4-25.	법률 도입 이전과 이후 변화 정도 비교	51

제5장

표 5- 1.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 조사 결과	57
표 5- 2.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P&SP) 활동 내용 요약	63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도계 마릿수 및 육계 육성률 변화	6
그림 2-2. 월별 도계 지수	6
그림 2-3. 품종별 도계 마릿수	7
그림 2-4. 닭고기 수출량 및 수출단가 변화	10
그림 2-5. 육계 산업 구조	11
그림 2-6. 원종계 수입과 종계 입식 마릿수	13
그림 2-7. 육계 사육 마릿수와 사육 농가수	14
그림 2-8. 농가당 육계 사육 마릿수 변화	14

제4장

그림 4-1.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 절차	54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015년 1월 현재 우리나라는 11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발효했으며, 협상 타결은 5건, 협상진행은 3건에 달함. FTA 확대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외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경쟁력 제고 정책도 그중 하나임.
- 축산업에서의 계열화사업 개념은 195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천되었음. 그 결과 현재 양계와 오리업계는 대부분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구조이며, 양돈업 수직계열화도 진행 중에 있음.
 -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축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계열화사업체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 문제에 따른 갈등 발생도 적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음.
 - 이 기본계획은 축산계열화사업의 산업적 역할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후 관련 제도의 성숙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선행연구 검토

2.1. 관련 연구실적

- 강병규 외(2014)는 육계계열화사업의 평가방식 중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상·하위 일정비율을 제거한 자료로부터 산출된 평균으로 계열농가를 평가하는 방식은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농가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함. 따라서 일부 극단치만을 제거한 후의 평균을 계열농가의 평가지표로 삼는 등 한국형 육계계열화 평가 유형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정리함.
- 이명기 외(2011)는 계열화사업과 관련한 이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가격정산방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함. 분석결과 농가들의 월별 사료요구율 분포가 좌우대칭형 정규분포에서 벗어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상대평가 방식의 적용은 농가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정리함.

- 정민국 외(2010)는 계열화의 개념과 유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농가조사와 계열업체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계열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했음. 이 연구는 계열화사업의 법적근거 확보 외에 표준계약서 적용, 갈등조정 기구 도입 등을 통해 계약서에 기초한 계열화사업 참여주체 간 거래관계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함.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이루어져 계열기업과 계약농가 간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과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 중심이었음. 반면 이 연구는 새롭게 시행된 법률의 현재까지 성과를 검토하고 추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또한 최근 들어 빈번한 가축 전염병 발생과 경기침체에 따른 계열업체 부도 등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안정적인 계열화사업 유지를 위한 신규 현안을 검토하고, 우수 축산계열화사업의 성과 평가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다른 연구와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음.

3. 연구 내용과 방법

- 이 연구는 축산계열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과거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축산계열화사업은 육계, 오리, 돼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나 업체 간 경쟁심화에 따른 계열업체 부도와 육계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본 연구는 육계 중심으로 분석함.

- 이 보고서의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등을 다루고 있음. 제2장은 육계산업의 현황과 구조를 다루고 있으며, 제3장은 육계계열화사업의 도입 과정과 현황을 정리함. 제4장은 계열화사업의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하고 제5장은 계열화사업의 발전 과제를 정리함.

제 2 장

육계산업 현황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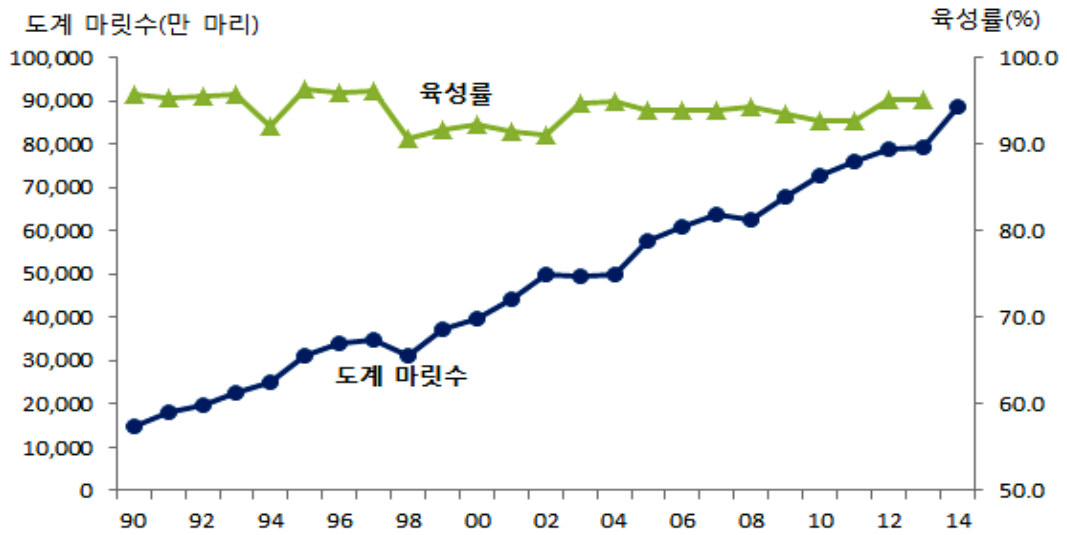
1. 육계산업 현황

1.1. 닭고기 수급 현황

1.1.1. 닭고기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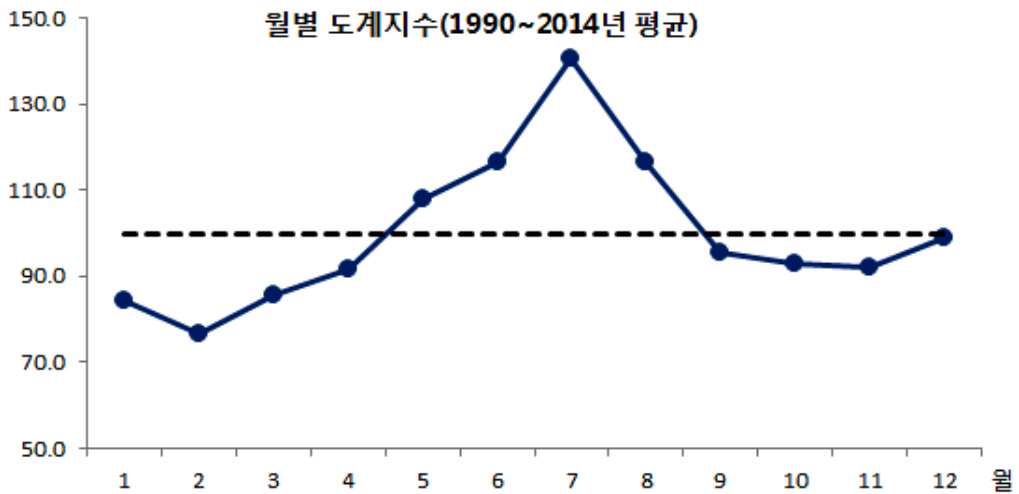
- 국내 도계 마릿수는 육계, 삼계, 산란 성계, 종계 등으로 구분되는데, 육계와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인해 도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도계 마릿수는 1990년 1억 4,754만 마리에서 2014년에는 8억 8,532만 마리로 연평균 7.8%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닭고기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1990~2013년 육계 평균 육성률은 93.9%를 기록했으며, 최저 90.7%에서 최고 96.3%를 나타냄.

그림 2-1. 도계 마릿수 및 육계 육성률 변화



자료: 농협중앙회(매년도). 『축산물가격 및 수급 자료』; 통계청(2014). 『축산물 생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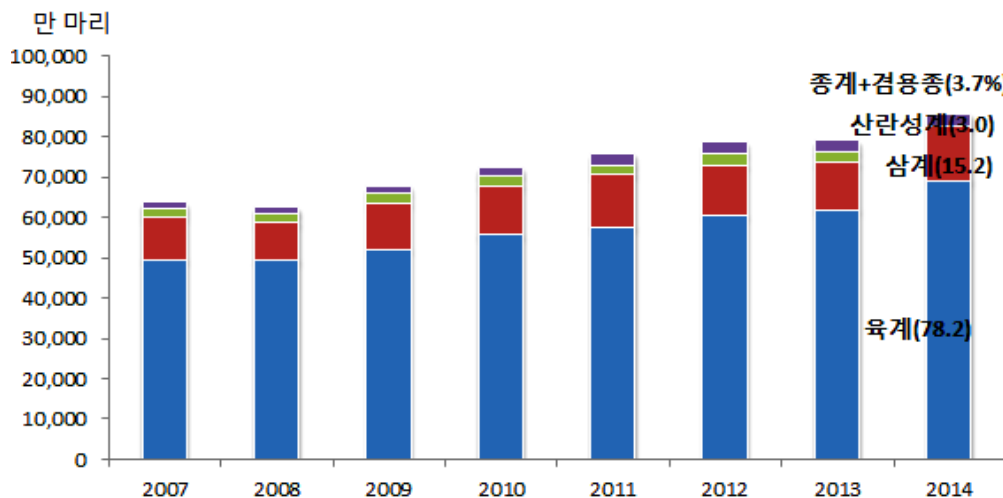
그림 2-2. 월별 도계 지수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도축실적.

- <그림 2-2>와 같이 국내 도계 마릿수 추이는 뚜렷한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음.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도계 마릿수가 많고 겨울철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7월의 도계 마릿수는 연평균보다 40.7% 많아 연중 최고 수준임.
 - 품종별로는 육계가 전체 도계 마릿수의 78.2%(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계가 15.2%, 산란 성계가 3.0%, 기타 종계 및 검용종이 3.7%를 차지함<그림 2-3>.

그림 2-3. 품종별 도계 마릿수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도축실적.

1.1.2. 닭고기 소비 현황

-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량은 1990년 17만 1,698톤에서 2013년 57만 9,944톤으로 3.5배 증가하였음. 닭고기 소비량에서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00%에서 2013년에는 78.2%로 감소하였음.
-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990년 4kg에 불과하였으나 연평균 4.7%씩 증가하

여 2013년에는 11.5kg으로 약 3배 증가하였음. 2004년은 국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하여 닭고기 소비가 2003년보다 16.5% 감소하였음<표 2-1>.

표 2-1. 닭고기 수급

단위: 천 톤

구 분		1990	2000	2004	2005	2010	2011	2012	2013
공급	이월	-	-	-	-	6.1	9.1	15.0	8.8
	생산	171.7	261.5	287.7	300.7	435.5	456.5	463.7	473.4
	수입	-	67.5	31.8	58.5	105.8	130.9	130.4	126.7
	계	171.7	329.0	319.5	359.2	547.4	596.5	609.1	608.9
수요	소비	171.7	327.3	318.8	356.7	522.3	566.2	579.4	579.9
	수출	-	1.7	0.7	2.5	16.0	15.3	20.9	26.1
	채고	-	-	-	-	9.1	15.0	8.8	2.9
	계	171.7	329.0	319.5	359.2	547.4	596.5	609.1	608.9
1인당 소비(kg)		4.0	6.9	6.6	7.6	10.7	11.4	11.6	11.5

자료: 농협중앙회(매년도). 『축산물가격 및 수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매년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1.1.3. 닭고기 수입 동향

- 닭고기 수입은 1997년에 자유화되었음. 닭고기 수입량은 국내 외환위기로 1998년에 감소한 이후 미국, 태국에서 HPAI가 발생하여 교역이 중단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2004년에 미국과 태국에서 HPAI가 발생하여 가금류 교역이 중단되면서 수입량이 급감함. 이후 닭고기 수입은 국내외 질병 발생과 환율 변동 등 교역 여건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닭고기 수입량은 환율 하락과 월드컵에 따른 닭고기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49.8%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닭고기

무관세 수입 할당으로 2010년보다 23.8% 증가한 13만 949톤이 수입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012년에는 무관세 할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만 389톤이 수입되었으며 2013년에는 국내에서의 수입육 수요 감소로 2.8% 감소하였음. 2014년에는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단가 하락과 신규 수입업체 진입으로 2013년보다 11.6% 증가한 14만 1천 톤이었음.

- 닭고기는 주로 미국, 브라질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두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72.8%(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 태국, 중국, 덴마크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입 품목 중에서 닭다리(냉동)의 비중이 69.9%(2014년 수입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고기(기타조제 저장)가 21.9%, 닭날개(냉동)가 4.4%, 닭가슴(냉동)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 국가별 닭고기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00	2005	2011	2012	2013	2014
브라질	0	2,430	76,434	145,147	147,193	138,177
미국	41,766	30,600	127,673	90,762	71,274	96,376
타이	18,983	12,601	43,273	46,837	55,141	62,706
중국	3,090	18,548	10,593	8,625	8,970	9,270
덴마크	85	41,239	8,029	6,889	12,141	13,911
기타	792	7,620	2,489	1,676	659	1,555
계	64,717	113,037	268,490	299,936	295,378	32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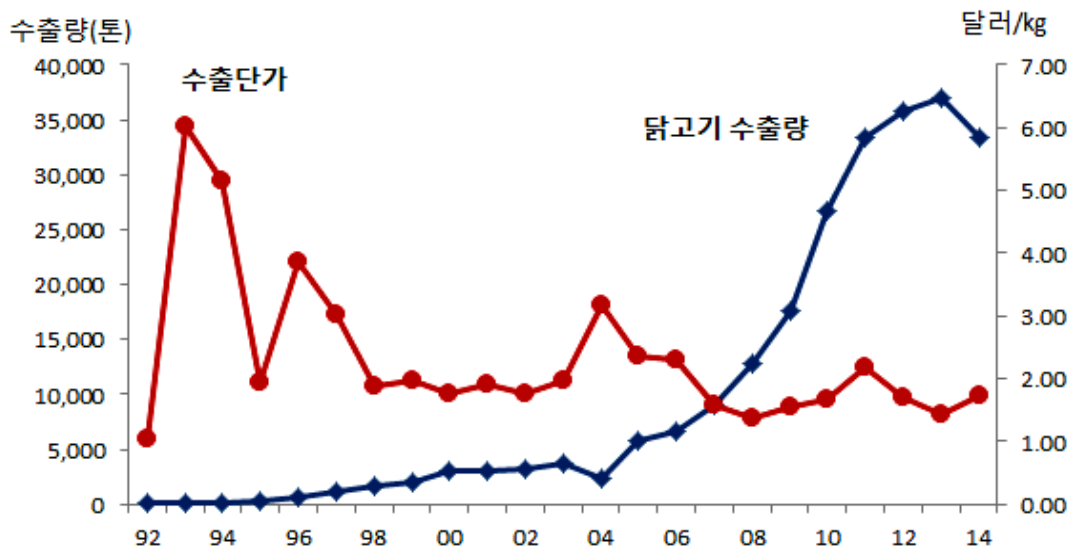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의 수출입통계.

1.1.4. 닭고기 수출 동향

- 우리나라의 닭고기 수출량은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수출단가는 산란 성계육 수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후반부터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로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닭고기를 수출하고 있음. 2000년대 중후반 닭고기 수출의 확대는 일본으로의 삼계탕 수출 증가와 더불어 베트남으로의 산란 성계육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일본으로의 수출은 삼계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절단육(냉동)은 주로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음.

그림 2-4. 닭고기 수출량 및 수출단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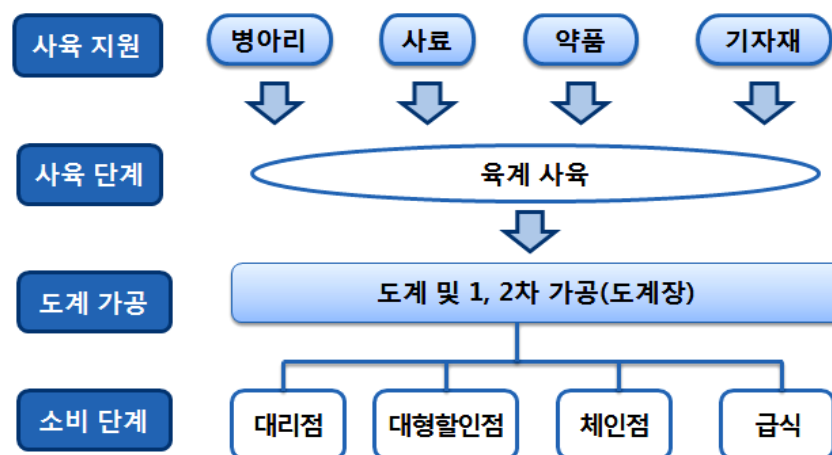
자료: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2. 육계산업 구조

- 육계는 부화 후 40일 이내에 상품화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중 자본회임 기간이 가장 짧은 품목으로 구분됨. 또한 생산비가 다른 축종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특성을 가지

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닭고기는 국민들의 참살이(well-being) 요구를 충족시키는 건강 백색육(白色肉)으로 인식되어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됨.

그림 2-5. 육계 산업 구조



자료: 정민국 외(2010). 『축산계열화의 평가와 발전 방안』.

- 정민국 외(2010)는 육계 산업의 구조를 사육 지원 단계, 사육 단계, 도계 및 가공 단계, 소비 단계로 세분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도 선행연구의 분류에 기초해서 현황을 살펴 봄.

2.1. 사육 지원 단계

2.1.1. 원종계(GPS) 및 종계 입식

- 육계 산업의 종자 역할을 하는 원종계(Grand Parental Stock: GPS) 시장은 닭고기 소비 증가와 함께 꾸준히 확대되어, 1990년 8만 3천 마리였던 원종계 수입은 2012년 23만 9천 마리까지 증가하였음.

- 그러나 국내 닭고기 생산 과잉우려로 업계의 자율적인 원종계 쿼터가 시행되어 2013년에 16만 9천 마리만 수입됨.
- 2014년 11월 원종계 쿼터는 해제되었지만, 원종계 주요 수출국인 영국(11월)과 미국(12월)의 HPAI 발생으로 국내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2014년에는 14만 7천 마리만 수입되었음.
 - 원종계 수입은 주로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루어짐.
- 국내 원종계 시장은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원종, 하림 등 4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2014년 기준 원종계 시장 점유율은 삼화원종이 41%로 가장 높으며, 이어 한국원종 29%, 사조원종 18%, 하림 12% 순임.

표 2-3. 원종계 수입 현황(2014년 기준)

원종계 수입사	계통	수입량(마리)	수입시기	수입국
삼화원종	로스	60,320	1월과 7월	영국
한국원종	아바에이카	43,000	1월과 6월	미국
사조원종	인디언리버	26,000	2월과 7월	미국
하림	코브	18,000	8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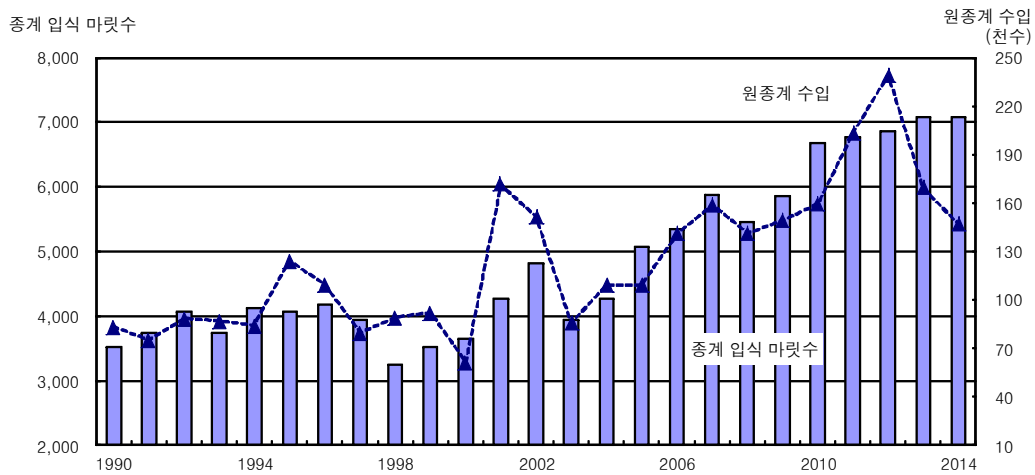
주 1) 한국원종은 체리부로의 자회사임.

2) 사조원종은 청정원종 수입량임.

자료: 대한양계협회(2015). 내부자료.

- 원종계 수입이 증가하면서 종계 입식 마릿수도 함께 증가함. <그림 2-6>과 같이 1990년 350만 마리에 불과하던 종계 입식 마릿수는 2014년에는 708만 마리까지 이르렀음.
 - 공급과잉으로 육계 가격이 급락할 것에 대비한 2013년의 원종계 쿼터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계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식됨.
 - 이러한 종계 입식의 증가는 육계 병아리 생산 증가로 이어짐.

그림 2-6. 원종계 수입과 종계 입식 마릿수



자료: 대한양계협회(2015).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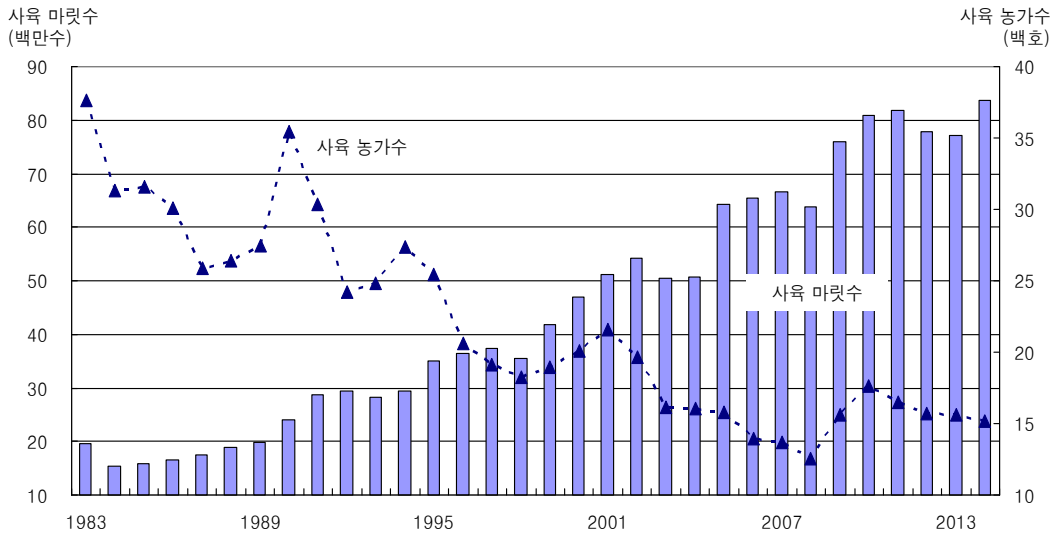
2.1.2. 종계장 및 부화장

-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허가받은 육용종계 농장은 약 330여 개로 계열업체 위탁 사육농가와 개인 사육농가로 구분되나, 일부 미등록 종계장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전국의 부화장 165개 중 육계 관련 부화장은 12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2.2. 사육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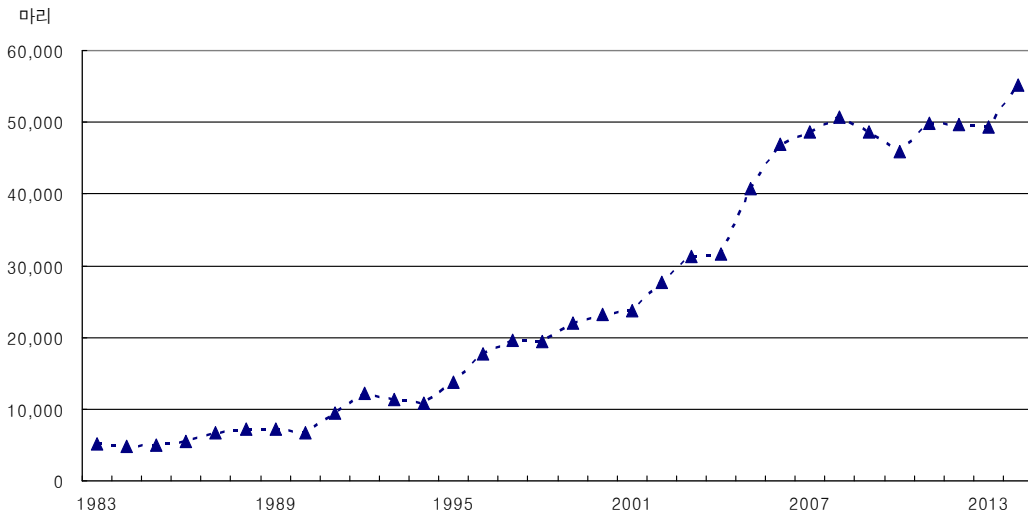
- 종계 입식이 늘어나면서 육계 사육 마릿수도 1983년 1,950만 마리에서 2014년 8천 4백만 마리로 4배 이상 증가하였음. 국내에서 다섯 번의 HPAI가 발생하면서 사육 마릿수 증가폭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음.

그림 2-7. 육계 사육 마릿수와 사육 농가수



주: 마릿수는 연평균, 농가수는 연말 기준임. 2006년부터 3천 수 이상 농가만 조사함.
 자료: 통계청(매년도), 『가축동향조사』.

그림 2-8. 농가당 육계 사육 마릿수 변화



주: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연말 사육 농가수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매년도), 『가축동향조사』.

- 육계 사육 마릿수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육 농가수는 감소세를 나타냈음.
 - 사육 농가수는 1983년 3,764호에서 연평균 약 4% 이상 감소하여 2014년 말에는 1,517호였음.
-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연평균 약 12%씩 증가하여 1983년 5,186마리에서 2014년 55,218마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규모화와 전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5만 마리 이상 사육 농가 비중이 1983년 전체의 1.8%에서 2014년 말 67.5%에 이르렀음.

2.3. 도계 및 가공 단계

- 2014년 전국 43개 도계장의 총 도계 마릿수는 8억 8,532만 마리였으며, 그중에서 1천만 마리 이상 도계한 상위 24개 도계장의 도계 마릿수는 전체 도계 물량의 88.7%를 차지하였음<표 2-4>.
 - 상위 10대 도계장의 도계 마릿수는 전체의 70.4%를 기록하였음.
- 주요 계열업체의 도계 현황(2014년 누계)을 살펴보면, 하림이 1억 8천만 수 (20.1%)로 가장 많음.
 - 이어서 올품 7천만 마리(8.0%), 체리부로 7천만 마리(7.9%), 참프레 6천 6백만 마리(7.4%), 동우 6천 3백만 마리(7.1%), 마니커 5천만 마리 (5.7%), 사조화인코리아 4천 6백만 마리(5.2%)임.

표 2-4. 도계장별 도계 마릿수 현황(2014년 기준)

도계장		도계 마릿수(수)	비율(%)
1	(주)하림	177,747,067	20.1
2	(주)올품	70,582,735	8.0
3	(주)체리부로	69,999,581	7.9
4	(주)참프레	65,905,925	7.4
5	(주)동우	62,712,748	7.1
6	(주)마니커 동두천지점	50,303,105	5.7
7	(주)사조화인코리아	46,248,954	5.2
8	(주)씨에스코리아	28,938,492	3.3
9	성화식품(주)	26,664,692	3.0
10	(주)청정계	24,204,513	2.7
합계		885,324,302(100.0)	

주 1) 도계 마릿수는 육계와 삼계 외에 모든 도계 물량을 합한 것임.

2) 하림은 (주)하림과 하림 정읍공장 물량의 합계임.

3) 체리부로는 (주)체리부로와 체리부로 금계지점 물량의 합계임.

4) 사조화인코리아는 사조화인코리아와 순동, 나주공장 물량의 합계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매분기). 『도축실적』.

2.4. 소비 단계

- 국내 육계 사육 규모화가 진행되고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1990년 17만 톤에서 2014년 52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1997년 수입 자유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닭고기 수입량은 2010년에 닭강정 유행 등의 이유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4년에는 환율 하락과 수입 닭고기 단가 하락으로 수입량이 13만 9천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1990년 닭고기 소비량은 1인당 4kg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1인당 소비량이 10kg을 넘어섰음.

- 2014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국내외 HPAI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보다 9.7% 증가한 12.6kg으로 추정됨.

표 2-5. 닭고기 수급 추이

단위: 천 톤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급	171.6	270.4	329.0	359.2	547.4	596.5	609.1	608.9	662.6
생산	171.6	263.1	261.5	300.7	435.5	456.5	463.7	473.4	520.3
수입	-	5.7	67.5	58.5	105.8	130.9	130.4	126.7	139.4
이월	-	1.5	-	-	6.1	9.1	15.0	8.8	2.9
수요	171.6	270.4	329.0	359.2	547.4	596.4	609.1	608.9	662.6
소비	171.6	268.3	327.3	356.4	522.3	566.2	597.4	579.9	634.1
수출	-	0.2	1.7	2.5	16.0	15.3	20.9	26.1	18.7
재고	-	-	-	-	9.1	15.0	8.8	2.9	9.8
1인당 소비(kg)	4.0	5.9	6.9	7.6	10.7	11.4	11.6	11.5	12.6

주: 2014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매년도),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제 3 장

육계계열화사업 도입과 현황

1. 육계계열화사업 도입 과정

1.1. 계열화의 개념

1.1.1. 용어 정의

- 축산업에서 축산물 생산 활동-사료와 종축 등 각종 투입재 공급-생산-도축 및 가공-판매-의 주체인 농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계열화’라는 용어를 사용함.
- 정민국 외(2010)는 수직적 연계(vertical linkage)나 수직적 조정(vertical coordination)등에서의 ‘수직적(vertical)’이란 표현은 생산물의 흐름이 상류(upstream) 단계인 생산에서부터 하류(downstream) 단계인 가공·유통·소비에까지 이르는 경로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리함.
- 특히 정민국 외(2010)는 수직계열화를 “...투입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수직적 흐름상에서 각 단계를 연계하기 위한 경제 행위...”라고 정의하고, 모든 단계가 연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수직계열화’와 ‘부분수직계열화’로 구분한다고 정리함.

- 수평계열화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각각의 단계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끼리의 연계...”라고 정의함.
- 김정주(2011)는 계열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의사결정 및 이윤 중심점의 단일화,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중간재의 원가 이전, 판매 노력의 절약, 위험과 불확실성의 감소, 절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함.

1.1.2. 법률적 정의

- 축산법 제3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양계)계열화사업을 시행 중임.
 - 법에 따르면 가축(양계)계열화사업의 목적은 “...전문 경영체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는 것...”임.
- 농림부고시 제2003-10호(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는 “...가축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생산 또는 사육, 사료공급, 가공 또는 유통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경영활동을 말하며, 가축계열화 사업자는 가축계열화를 위하여 농민과 계약 또는 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 또는 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함.

- 농림부고시 제2003-10호(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봄.
-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축종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란, 계약사육농가와 체결한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가 축종별로 다음 수준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말함.
 - 돼지: 5천 마리 이상
 - 육계: 33만 마리 이상
 - 토종닭: 12만 마리 이상
 - 산란계: 6만 마리 이상
 - 오리: 15만 마리 이상
 - 염소: 1천 2백 마리 이상

1.2. 육계계열화사업의 발전 과정

- 우리나라 양계산업에서 최초의 계열화시도는 1956년 만들어진 ‘한국유축농업연구소’(韓國有畜農業研究所) 내에서 계란생산과 판매의 계열화를 추진한 ‘양계통합연구회’로 알려져 있음.
 - ‘양계통합연구회’ 활동은 외국서적에 소개된 계열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나, 시세변화에 따른 회원농가의 계약불이행 문제로(즉, 육계 사육의 투기적 성격 때문에) 뚜렷한 실적 없이 단기간에 실패하고 말았음(한국계육협회 2002).
- 1960년대 들어 통닭센터가 출현하여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육계사업이 채산성 높은 수익사업으로 인식되어 종계업과 부화업, 배합사료업, 동물약품업 등 신규업종이 생겼음.

- 1968년 (주)영육농산이 시간당 1,000마리 처리 규모의 근대식 도계장을 설치하고 수원지역의 농가들과 계약사육을 시작하면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되었음(박영인 1994).
- 1970~80년대 계열화 과정은 개별 기업의 독자경영에서 부문별 통합경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었음.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육계단지 조성사업과 계열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 통합 경영체제는 1990년에 조합형태와 기업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착되었음.
 - 농가단위에서는 사육규모의 전업화와 대형화가 시작되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계열화 생산업체가 크게 늘어나 전체 육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계열화 생산 물량이 점유하게 되었음.

표 3-1. 육계계열화 발전 과정

1970~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 영육, 대한사료: 도계장 신축 - 1984년 · (주)천호인티그레 이션: 병아리, 사료, 가공공장, 유통 등 육계 통합 사업체계 구축	- 주요 계열화업체: 14개 · 조합형: 4개 (목우촌, 한국, 충북, 전북) · 기업형: 10개	- 계열화사업 신규 진출 급증 · 계열화 지정업체 33개(2010년 5월 기준) - 신명, 우림, 대한 축산, 미림식품 등 부도(2008년 부도)	- 대규모 계열화사업 신규 진출(사조, 참프레) · 계열화 지정업체 52개(2013년 말 기준) - 청정계 부도 (2014년)

주: 한국축산경제연구원(2010)의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향』 일부 인용.

1.3. 축산계열화법의 도입

1.3.1. 축산계열화법 제정 배경

- 2008년 10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주)하림과 농가 간의 불평등계약 문제에 대한 추궁이 있었음. 국정감사에서는 계약농가가 농가의 의무 16가지가 규정된 계약 약정을 위반할 경우 계열업체는 서면통보나 법적인 조치 없이 사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불공정 계약서가 채택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시정이 필요함이 언급됨.
- 2009년 양계협회는 가축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 ‘육계계열화방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법 제정의 중요성을 도출함.
- 2010년 9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하림의 계열화사업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계열화사업과 대형패커 등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 차원으로 확산됨.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열화사업과 관련 생산성을 높이면 농가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평가방식의 문제점과 사육비 인상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이 증인으로 참석한 양계협회와 (주)하림 관계자 사이에 있었음.
- 2010년 12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8명의 국회의원 및 토론자와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육계약서, 사육경비 보장, 사육경비 평가방식 등에 대한 토론이 벌어짐. 이후 법제화 작업을 위해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등 관련 단체 전문가들로 ‘계열화사업 제도개선 TF팀’이 구성되어 전문가 협의와 농가 설명회 등을 거쳐 법률안 초안을 마련함.
- 이를 바탕으로 2011년 10월 13일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에서 개최되어 총 7장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동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8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률안이 통과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2012년 2월에 공포되어 1년이 경과한 2013년 2월 23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

1.3.2. 축산계열화법 주요 내용

-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로 구성되며, 이 법의 적용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계열화사업자로 함. 제2장은 축산계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제5조(수급조절 등)에 따라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음.
- 제3장은 계약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임. 사육계약서 작성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제7조)과 사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제8조),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사항(제9조)에 대해 정하고 있음.
- 제4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임. 제10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제11조(지정방법 등), 제12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 취소)로 모범사업자에 대해서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의 우선적 지원, 금리 등 정책·제도 운영 시 우대,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5장은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에 관한 사항임.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15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를

통해 계열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상생을 위한 협조체계 설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장은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제16조)에서부터 조정의 종결(제29조)에 이르기까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조정 절차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제7장은 보칙에 관한 사항, 제8장은 벌칙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음.

1.3.3. 표준계약서 및 관련 고시 도입

- 축산계열화법의 핵심 내용인 표준계약서, 사육원자재의 품질, 사육시설 기준 등은 몇 개월간의 논란 끝에 만들어졌는데 특히 표준계약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까지 받고 합의가 이루어짐.
- 새롭게 도입된 표준계약서의 경우 과거(2002년)에 양계협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만들었던 표준계약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계열화사업 참여자의 의무와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계열화사업 평가와 모범사업자 지정 및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에 반영함.
-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3호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다룸.
- 표준계약서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3-303호)가 마련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노력으로는 계열농가협회의 구성과 지원, 농가와 업체 간의 분쟁조

정을 위한 시도 합의권고 지침의 마련 및 시달, 축종별 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등이 있음. 또한 축산계열화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

2. 육계계열화사업 현황

2.1. 국내 육계계열화사업자 현황

-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육계계열화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원종계, 사료, 도계, 가공, 유통 및 외식까지 모든 부문에서 완전 계열화가 이루어진 업체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육계계열화 유형 중 조합형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음.

표 3-2. 육계 계열업체 계열화 진행 정도

구분	원종계	중계	부화	사료	사육	도계	냉동 창고	가공	유통	외식
목우촌	○	○	○	●	●	●	●	●	●	●
하림	●	●	●	●	●	●	●	●	●	●
동우	○	●	●	●	●	●	●	●	○	○
올품	○	●	●	●	●	●	●	○	○	○
체리 부로	●	●	●	●	●	●	●	●	●	●
마니커	○	●	●	○	●	●	●	●	●	●
성화	○	●	●	○	●	●	●	●	○	●
한강 CM	○	○	○	○	○	●	●	●	○	●

주: ● 계열화, ○ 미계열화
자료: 강병규 외(2014) 참고.

- <표 3-2>는 강병규 외(2014)가 육계 계열업체의 계열화 진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임. 그러나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종계에서부터 유통분야까지 업체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완전 계열화를 달성하는 업체수와 해당 업체의 도계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2. 국내 육계계열화사업 시장 집중도

-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전체 도계 마릿수에서 상위 10위까지 계열화사업자의 도계 마릿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0.4%에 달함.

표 3-3. 주요 계열업체 도계 실적(2014년)

구분	닭			
	합계	육계	삼계	기타
하림	177,747,067	133,212,678	27,354,905	17,179,484
올품	70,582,735	49,999,244	17,246,400	3,337,091
체리부로	69,999,581	52,686,469	15,315,096	1,998,016
참프레	65,905,925	54,085,440	6,906,634	4,913,851
동우	62,712,748	44,780,676	17,615,445	316,627
사조화인코리아	46,248,954	30,397,050	14,301,037	1,550,867
마니커	50,303,105	49,420,415	882,690	-
씨에스코리아	28,938,492	-	-	-
성화식품	26,664,692	-	-	-
청정계	24,204,513	-	-	-
소계(A)	623,307,812	414,581,972	99,622,207	29,295,936
전체 도계(B)	885,324,302	692,011,544	134,197,942	59,114,816
(A/B)	70.4%	59.9%	74.2%	49.6%

주 1) 기타는 산란노계, 산란중계, 육용중계, 검용중 도계 물량의 합을 의미함.

2) 하림은 (주)하림과 하림 정읍공장 물량의 합계임.

3) 체리부로는 (주)체리부로와 체리부로 금계지점 물량의 합계임.

4) 사조화인코리아는 사조화인코리아와 순동, 나주공장 물량의 합계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 도축실적.

- 산업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수(index) 중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기업 규모에 초점을 맞춘 집중률(Concentration Ratio: CR_n)이 있으며, CR_n은 상위 n개 기업들의 누적점유율을 나타냄(Pepall et al. 2008).
 - CR_n이 100%에 가까울수록 독점시장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함.
-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 전체 판매량 중 상위 4개 기업이 차지하는 판매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CR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개 업체 시장 집중도인 CR₃을 주로 사용함.
-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다고 해도 상위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약한 과점시장(weak oligopoly)일 수 있으며, 집중도가 낮을지라도 상위 대기업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강한 과점시장(tight oligopoly)일 수도 있음.
- 국내 육계계열화업체들의 육계 산업에서의 기업 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해 <표 3-4>는 2005년과 2010~2014년 기간 동안의 CR₃와 CR₅, CR₈를 계산하고 연평균 증감률을 보임.
 - 시장 집중도 분석을 위해서는 업체별 매출액을 이용해야 하나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각 계열화업체의 도계 마릿수를 대신 이용함.

표 3-4. 육계계열화업체의 시장 집중도(CR)

단위: %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감률 (2005~14년)
CR ₃	32.5	39.4	40.8	40.4	36.7	36.0	1.0
CR ₅	42.3	53.7	54.5	54.2	49.5	50.5	1.8
CR ₈	53.2	62.9	64.0	63.7	60.4	64.7	2.0

주: 연도별 도계 마릿수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도축실적통계를 이용함.

- <표 3-4>는 상위 3, 5, 8개 기업의 육계시장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2005년에 비해 2014년의 시장 집중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시장 집중도의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2%에 불과해 일반적인 예상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계열화업체의 시장 집중도는 2012년에는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후 CR₃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CR₅와 CR₈는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였음.
 - 업체 수에 따라 서로 다른 시장 집중도 변화 추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력을 갖춘 신규 업체들의 진입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임.
 - 즉,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집중도는 낮아진 반면 10위권 이내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CR₅와 CR₈는 오히려 증가함.
- CR_n지수를 대신해서 기업의 수가 같아도 집중도에 정도에 따라 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이용해서 시장 집중도를 계측한 결과는 <표 3-5>와 같음.
 - 시장 집중도 분석을 위해서는 업체별 매출액을 이용해야 하나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각 계열화업체의 도계 마릿수를 대신 이용함.

표 3-5. 육계계열화업체의 시장 집중도(HHI)

구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감률 (2005~14년)
3개 기업	452.3	591.1	637.9	617.1	540.2	529.2	1.6%
5개 기업	500.7	694.0	731.0	719.6	623.6	634.8	2.4%
8개 기업	540.0	722.2	761.1	749.4	664.2	705.0	2.7%

주: 연도별 도계 마릿수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도축실적통계를 이용함.

- <표 3-5>에서 상위 3, 5, 8개 기업 각각의 HHI는 공통적으로 2005년에 비해 2014년에 더 높아졌으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2.7%으로 계산됨.
- HHI의 경우에도 2011년까지 증가한 후 2012년부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상위 5개 및 8개 기업의 HHI는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나 3개 기업의 HHI는 계속 감소함.
 - 이러한 결과는 <표 3-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쟁하는 업체들의 수가 더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8위권까지 기업들의 HHI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육계 산업의 독과점화 경향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국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육계 산업의 구조는 5개 이상의 기업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한 과점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어 서로 간의 인수 및 합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기간에 ‘강한 과점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존함.

제 4 장

계열화사업 문제점과 성과

1. 계열화사업 문제점

1.1. 과거 농가 조사 결과

1.1.1. 양계협회 조사 결과

- 대한양계협회가 2001년 ‘제12회 전국 육계인 대회’에 참석한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육계계약사육 현황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수의 농가들이 사육계약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음.¹
 - 설문에 답한 계약사육 농가들의 76.3%가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답변했으며, 계약사육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육비 책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51%에 달했음.
 - 또한 양계 농가들은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병아리 품질(42%), 사료 품질(27%), 질병(11%), 사양관리대금지급(8%), 계사시설(3%) 등의 순으로 답했음.

¹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6763>>.

- 소득향상에 유리한 사육형태로는 응답자의 66.2%가 일반사육이라고 답해 계약사육이라는 답의 2배에 달했으나, 현재 계약사육 중인 농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사육이 더 유리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이는 계약사육 농가의 대부분은 소득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계약사육을 선택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대한양계협회가 2010년 ‘전국 육계인 대회’에 참석한 육계 계열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계열화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89.9%에 달했음.
 - 항목별로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사육수수료(51.2%), 사료 품질(42.1%), 병아리 품질(42.7%) 등으로 과거 2001년의 조사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줌.
- 한편 농가들은 병아리 이력제 실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농가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각각 97.2%, 97.6%, 97.3%가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 병아리 품질과 사료품질 저하에 따른 피해경험 여부에 대해 88.7%가 경험했다는 응답을 한 반면,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음.²
- 대한양계협회의 2001년과 2010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두 조사 간에 1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육수수료, 사료와 병아리 품질 등 계열화업체와 농가 간의 기본적인 계약 내용의 실천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농가가 계열업체와의 위탁 사육계약을 선호함을 알 수 있음.

2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59193>>.

1.1.2. 과거 선행연구 조사 결과

가. 기타 선행연구 조사 결과

- 김정주 외(2011)의 연구는 농가 설문을 통해 육계 사육계약서 내용 중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조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육비 정산 결제일 기간이 너무 길며 1주일 이내로 줄어야 함.
 - 불량 병아리 공급 시 공급자에 대한 페널티가 없음.
 - 계약서 구성 항목 중 출하 시 상차보조금 금액, 수도광열비 관련 내용 등 현실에 맞게 적용하거나 새롭게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많음.

- 김정주 외(2011)의 연구는 육계 생산비 중 가축비·사료비·약품비는 전액 계열업체가 부담하고, 난방비·깔짚비·상차비는 업체가 일부 부담, 그 외 항목은 사육농가가 부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2009년 통계청 생산비 기준으로 5만 수 이상 규모의 농가에서만 (+)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함.
 -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의 사육보수 및 기타 비용항목의 현실화 문제를 지적함.
 - 다만 이 연구는 생산지수 보너스, 시세 보너스 등의 계열업체 제공 각종 보너스가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분석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축산경제연구원(2010)과 김정주 외(2011)는 표준계약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체와 농가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안)을 제시함.

- 김정주 외(2011)와 강병규 외(2014)는 계열업체의 평가방식 중 상대평가 방식에서 상·하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을 제외한 평균값을 지표로 사용할 경

우 농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그 대안으로 극단적인 자료를 몇 개만 제거한 평균을 평가지표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2010년)³

-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육계계열화사업에 동참한 이유로는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29.6%), 육계 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변동성 감소(27.8%), 사료와 원료 등 생산요소들의 안정적 확보(24.1%)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이러한 농가의 계열화 참여 동기는 과거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 여건 확보 가능성 때문임을 알 수 있음.
- 육계계열화 관련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농가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계열농가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 관계’와 ‘입추 간격’, ‘계열업체의 컨설팅(사양관리) 수준’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분쟁 발생 시 해결방식’, ‘병아리 품질’, ‘계열업체와 농가 간 계약의 공평성’ 등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들의 특징은 계열업체와 농가 간의 계약행위 관련한 ‘계약서의 공정성 문제’와 ‘계약서에 따른 계약행위 준수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음.
 -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육비 정산기간’, ‘평가 방식’, ‘사육비 정산 금액 수준’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간 순위 만족도를 선택하고 있음.

³ 이 절의 내용은 정민국 외(2010)의 107~115쪽 내용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표 4-1. 육계계열화에 대한 농가 만족도 조사 결과(2010년)

구분	순위	만족도 지수 (100 기준)	응답비율(%)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입추간격	1	59.7	0.8	20.0	60.9	13.6	4.7
계열농가 간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	2	56.4	1.0	17.3	54.5	17.3	9.9
계열업체의 컨설팅(사양관리) 수준	3	56.0	1.7	16.0	51.5	22.1	8.7
사육비 정산 기간	4	51.7	2.2	11.7	40.8	33.2	12.1
사료 품질	5	51.5	0.8	10.1	46.9	30.1	12.1
평가 방식	6	49.5	1.3	8.2	42.2	33.2	15.1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	7	45.7	0.9	3.8	35.0	43.6	16.7
계열업체와 농가 간 계약의 공정성	8	41.5	-	3.0	28.3	41.6	27.0
병아리 품질	9	40.4	-	3.3	24.6	42.9	29.2
분쟁 발생 시 해결방식	10	37.9	0.5	1.8	19.9	42.5	35.3

주: 만족도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만족도 수준에 점수를 부여한 후 합산함 점수임(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

자료: 정민국 외(2010) 재가공.

- 한편 계열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계·부화장 질병관리 및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아 공급되는 병아리 품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음. 다음으로는 ‘위탁사육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선택이 많아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뒤를 이어 ‘사육수수료의 보장’, ‘계열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육농가 중심의 조합 육성’, ‘축사시설 현대화’와 ‘농가협의회 활성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계열화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음.
- 결국 이미 계열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열화 사업 참여자 간 계약내용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농가들의 인식이 확인되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가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음.

1.2. 본 연구의 조사 결과

1.2.1. 일반 현황

-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 경영 현황과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설문조사했음.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94개 농가가 조사 대상이었음.
- 설문 대상 농가의 평균 연령은 55.3세, 평균 경력은 19년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계사의 총면적은 평균 877평에 달했음.
 - 농가당 운영 중인 계사 동수는 평균 4.7개 동으로 계사 1동의 평균면적은 약 185.3평에 달했음.
 - 농가의 계사 운영 형태는 과거 선행연구들에 비해 환경조절식 무창계사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설문 조사 농가들의 1회 최대 사육규모의 경우 20천~130천 마리 규모였으며 평균은 약 54천 마리 수준이었음.
 - 조사 대상 육계농가들의 1회 최대 사육 마릿수의 경우 3~5만 마리 규모가 41.5%, 5~8만 마리 규모가 43.6%로 나타남.

표 4-2. 설문조사 농가 계사 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계사형태	환경조절식(무창계사)	48	51.1
	환경개방식	32	34.0
	채래식(하우스)	14	14.9
	소계	94	100.0

표 4-3. 설문조사 농가 사육규모 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사육규모	3만 마리 이하	7	7.5
	3~5만 마리	39	41.5
	5~8만 마리	41	43.6
	8~10만 마리	5	5.3
	10만 마리 이상	2	2.1
	소계	94	100.0

1.2.2. 경영 형태

- 경영 형태의 경우 조사대상 농가의 91.5%인 86개 농가가 위탁사육형태이며, 8.5%인 8개 농가는 위탁사육과 일반사육을 병행하는 농가로 조사되어 과거 연구와는 달리 일반사육만으로 운영하는 농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근래 들어 공급과잉으로 육계 산지가격이 과거에 비해 낮은 상황이 지속되어 일반사육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 조사 대상 농가들이 계열업체와 육계 사육계약을 제일 처음 시작한 연도에 대한 답변은 평균 2001년이었으나, 1995년과 2001년이라는 답변이 각각 10.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음.
- 현재 계약을 맺은 계열업체와 몇 개월째 계약 중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

한 답변은 평균 44개월이었음. 특이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해 10년 이상이라는 답변을 한 농가가 전체 응답(87농가)의 12.6%인 11개 농가에 달했는데, 이들 농가들은 대부분 농협중앙회 목우촌 또는 지역 소재 농업법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임.

- 10년 이상 같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농가를 분석에서 제외할 경우의 평균은 23.7개월로 나타남. 따라서 민간 계열업체와 농가의 계약기간은 평균 2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해서 80% 이상의 농가는 가축공제와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축공제 가입의 경우 자부담률이 50%인 경우가 26개 농가 중 11개 농가로 42.3%에 달하며, 자부담률이 100%인 농가는 1개 농가였음.

표 4-4. 설문 답변 농가의 보험 가입 현황

구분	가축공제	화재보험	가축공제+ 화재보험	없다	소계
명	26	1	46	20	93
(비율)	(28.0%)	(1.0%)	(49.5%)	(21.5%)	(100%)

- 농장입구와 계사입구에 소독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90%의 농가는 농장입구에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약 76%는 계사입구에 소독시설을 갖추고 있음.

표 4-5. 설문 답변 농가의 소독조 설치 현황

구분	있음	일부 있음	없음	소계
농장입구	85(90.4%)	2(2.1%)	7(7.5%)	94(100%)
계사입구	71(76.3%)	3(3.2%)	19(20.5%)	93(100%)

1.2.3. 경영 내용

- 2014년 한 해 동안 설문 응답 농가의 총 출하횟수는 평균 5.1회였으며, 같은 기간 총 출하 마릿수는 농가당 평균 26만 1,371마리였음.
 - 따라서 설문 대상 농가의 1회당 평균 입추 마릿수는 51,249마리였음.
- 육계 출하 시 발생하는 각종 추가비용 지출에 대해 응답한 농가들은 1회 평균 약 638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답함.
 -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비용은 29.7%를 차지하는 깔짚비였으며, 이어서 약품비(22.7%), 수도비(18.0%), 첨가제 비용(17.6%), 인건비(12.8%) 순으로 나타남.

표 4-6. 육계 출하 시 1회 평균 발생한 추가 비용

단위: 원

구분	응답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료	74	83,784	1.3	595,882	0	5,000,000
첨가제	72	1,124,236	17.6	1,439,644	0	10,000,000
약품	74	1,452,027	22.7	1,801,910	0	10,000,000
소독	73	235,753	3.7	450,906	0	3,000,000
분뇨처리	72	498,611	7.8	875,688	0	5,000,000
깔짚비	72	1,894,206	29.7	2,789,658	0	20,000,000
수도비	72	1,149,891	18.0	2,172,529	0	10,000,000
인건비	72	817,454	12.8	2,478,997	0	20,000,000
기계 비용	72	415,278	6.5	660,273	0	3,500,000
기타 비용	72	471,663	7.4	1,774,360	0	15,000,000
합계		6,382,767	100.0	8,603,861	0	42,000,000

- 2014년 기준 1회 출하 시 사육비 정산 금액은 평균 2,360만 원이었으나 추가적인 지출을 고려한 1회 평균 실소득은 약 1,214만 원이라고 응답함.
 - 이를 연간 총 출하 마릿수에 적용하면 응답농가의 2014년 연평균 실소득은 약 6,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표 4-6>에서 농가들이 응답한 1회 평균 추가 비용금액 수준이 638만 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경우 농가들의 실제 실소득 수준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거래 중인 계열업체의 평가방식에 대해 절대평가라는 응답이 59.6%인 56개 농가, 상대평가라는 응답은 37.2%인 35개 농가였음. 한편 기타는 3.2%인 3개 농가로 생체 중량별 구매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음.

표 4-7. 과거 계열업체 변경한 경우 그 이유

과거 변경 이유	빈도(명)	비율(%)
평가방식이 불합리해서	33	15.6
병아리 품질이 안 좋아서	32	15.1
사육비 정산금액이 너무 낮아서	29	13.7
사료품질이 안 좋아서	25	11.8
사육비 정산이 제때 잘 안 이루어짐	20	9.4
농가입장을 무시하고 강압적이어서	13	6.1
기존 업체가 부도 등으로 폐업해서	12	5.7
병아리 입추간격이 안 지켜져서	11	5.2
업체의 부도가능성이 있어서	8	3.8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불합리해서	8	3.8
기타	8	3.8
표준계약서 적용을 안 해서	5	2.4
이웃의 권유로	3	1.4
다른 업체의 계약 권유로	2	0.9
사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이 부실해서	2	0.9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해서	1	0.5
합계	212	100.0

주: 복수 응답을 반영한 조사결과임.

- <표 4-7>은 과거에 계열업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답변은 ‘불합리한 평가방식’으로 15.6%를 차지했으며, ‘병아리 품질이 안 좋아서’, ‘사육비 정

산금액 수준’, ‘사료품질 불만’ 등의 답변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답변으로는 ‘육계 출하지연’과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등이 높은 빈도수를 보임.
- 한편 앞으로 현재 계약 중인 계열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4.3%로 변경을 원한다는 답변(45.7%)보다 조금 더 많았음.
 - 계열업체 변경을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그 주된 이유로 ‘낮은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28.6%), ‘불합리한 평가방식’과 ‘사료 품질’ 순으로 불만을 표시함<표 4-8>.

표 4-8. 향후 계열업체 변경 희망 이유

변경 희망 이유	빈도(명)	비율(%)
사육비 정산금액이 너무 낮아서	12	25.0
평가방식이 불합리해서	10	20.8
사료품질이 안 좋아서	6	12.5
병아리 입추간격이 안 지켜져서	5	10.4
병아리 품질이 안 좋아서	4	8.3
농가입장을 무시하고 강압적이어서	3	6.3
표준계약서 적용을 안 해서	3	6.3
사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이 부실해서	2	4.2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불합리해서	1	2.1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해서	1	2.1
사육비 정산이 제때 잘 안 이루어짐	1	2.1
합계	48	100.0

주: 복수 응답을 반영한 조사결과임.

- <표 4-7>과 <표 4-8>을 통해서 농가들이 계열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업체변경 이유로 작용하는 주된 요인은 ‘낮은 사

육비 정산금액 수준’, ‘불합리한 평가방식’, ‘낮은 사료와 병아리 품질’ 등임을 알 수 있음.

- 즉 개별 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가장 큰 불만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계열화사업 성과

2.1. 육계 생산성 변화

-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국내외 사례들은 육계계열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육계 생산성의 증가를 제시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계열화 진행 정도에 따라 육계 생산성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분석함.
 -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사용하는 육계 생산성 지표는 ‘생산지수’이며 이는 $(\text{육성률} \times \text{출하체중}) \div (\text{사육일수} \times \text{사료요구량})$ 으로 계산됨.
- 이 연구에서는 생산지수 계산을 위해 각각의 개별 지표를 육계협회를 통해 입수하여 분석에 활용함.
 - 계열업체 소속이 아닌 비계열화 일반농가의 사육 성적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농가(계열화 농가+비계열화 농가)를 집계한 통계청의 ‘축산물생산비’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여 계열화 농가의 성적과 비교함.
- 육성률, 사육일수, 출하체중, 사료요구량, 일당 증체량 등의 변화추이는 아래 <표 4-9> ~ <표 4-13>과 같음.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지표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나, 다만 2012년의 경우에는 지표가 나빠지는 경우가 발견됨.
 - 2012년의 경우에는 신규업체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업체들의 시장점유

을 확보 경쟁이 발생하면서 사육수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대부분의 생산지표가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표 4-9. 육성률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계열화 농가의 육성률(A)	93.0	94.5	94.4	94.9	94.2	96.3
전체 농가의 육성률(B)	92.3	93.8	92.7	92.7	95.1	95.1
상대적 육성률(C=A/B)	1.01	1.01	1.02	1.02	0.99	1.01

표 4-10. 사육일수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계열화 농가의 사육일수(A)	36.17	34.60	31.84	31.74	33.59	31.24
전체 농가의 사육일수(B)	38.8	37.6	33.13	33.58	32.67	32.7
상대적 사육일수(C=A/B)	0.93	0.92	0.96	0.95	1.03	0.96

표 4-11. 출하체중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계열화 농가의 출하체중(A)	1.51	1.51	1.52	1.53	1.52	1.54
전체 농가의 출하체중(B)	1.53	1.38	1.44	1.45	1.45	1.45
상대적 출하체중(C=A/B)	0.99	1.09	1.06	1.06	1.05	1.06

표 4-12. 사료요구량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계열화 농가의 사료요구량(A)	1.91	1.77	1.72	1.70	1.77	1.62
전체 농가의 사료요구량(B)	1.78	1.58	1.60	1.60	1.57	1.55
상대적 사료요구량(C=A/B)	1.07	1.12	1.08	1.06	1.13	1.04

표 4-13. 일당 증체량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계열화 농가의 일당 증체량(A)	41.7	43.6	47.9	48.2	45.2	49.4
전체 농가의 일당 증체량(B)	39.4	37.6	43.5	43.2	44.4	44.3
상대적 일당 증체량(C=A/B)	1.06	1.16	1.10	1.12	1.02	1.11

- 위에 제시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계산한 육계 생산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계열화 농가의 생산지수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203.5에서 2013년 294.0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음.
 - 이에 비해 전체 농가의 생산지수는 2000년 204.2에서 2013년 272.2로 계열화 농가만을 고려한 생산지수에 비해 그 증가폭이 더 작게 나타나 계열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가 실재함을 알 수 있음<표 4-14>.

표 4-14. 육계 생산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계열화 농가의 생산성(A)	203.5	233.4	262.9	269.3	240.2	294.0
전체 농가의 생산성(B)	204.2	218.4	252.1	250.9	268.1	272.2
상대적 생산성(C=A/B)	1.00	1.07	1.04	1.07	0.90	1.08

2.2. 선제적 육계 수급조절

2.2.1. 사업 개요

-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가 커지면서 양계협회와 육계 계열업체 간의 합의를 통한 선제적 육계 수급조절 노력으로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됨.
- 2013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 기간 동안 양계협회와 계열업체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육용 종계 감축사업’을 실시하여 총 465,646마리의 종계를 도태함.
 - 일반 농가 34,915마리(7%), 계열업체 430,731마리(93%)
 - 32주 이상~40주 미만: 13,523마리(3%)

- 40주 이상~52주 미만: 175,594마리(38%)
- 52주 이상: 276,629마리(59%)

2.2.2. 사업 효과

- 자율적인 ‘육용 종계 감축사업’을 통해 2013년 4~12월 기간 동안의 육계 도계 마릿수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월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종계 감축효과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되지만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2월 이후 종계 감축효과가 소멸하게 됨.

표 4-15. 육용 종계 감축사업에 따른 육계 도계 마릿수 감소 효과(2013)

단위: 만 마리,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감축 전	5,501	5,711	5,531	6,684	5,962	4,885	5,237	5,262	5,848	5,624
감축 후	5,044	5,275	5,140	6,186	5,772	4,780	5,198	5,249	5,834	5,386
증감률	-8.3	-7.6	-7.1	-7.5	-3.2	-2.1	-0.8	-0.2	-0.2	-4.2

- ‘육용 종계 감축사업’으로 육계 외에 삼계 등 모든 닭을 포함한 총 도계 마릿수가 감소하여 2013년 4~12월 총 도계 마릿수는 월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4-16. 육용 종계 감축사업에 따른 총 도계 마릿수 감소 효과(2013)

단위: 만 마리,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감축 전	6,653	7,357	7,573	9,741	7,727	5,933	6,410	6,374	7,034	7,200
감축 후	6,197	6,921	7,182	9,243	7,536	5,828	6,370	6,361	7,020	6,962
증감률	-6.9	-5.9	-5.2	-5.1	-2.5	-1.8	-0.6	-0.2	-0.2	-3.3

- ‘육용 종계 감축사업’으로 인한 도계 마릿수 감소로 해당 기간 육계 산지가격은 상승세를 보임.

- 2013년 4~12월 육계 산지가격은 평균 1,841원/kg으로 감축 전의 1,676원/kg보다 9.8% 상승함.

표 4-17. 육용 종계 감축사업에 따른 육계 산지가격 상승 효과(2013)

단위: 만 마리, %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감축 전	1,394	1,465	1,611	1,584	1,846	1,591	2,057	1,884	1,647	1,676
감축 후	1,679	1,734	1,829	1,983	2,011	1,684	2,097	1,894	1,655	1,841
증감률	20.4	18.3	13.5	25.2	9.0	5.8	1.9	0.5	0.5	9.8

3. 계열화사업 관련 법률 제정 효과

3.1. 농가 조사 결과

3.1.1. 법률 관련 일반 현황

-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들어 봤다’는 답변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9.8%로 ‘잘 알고 있다’는 답변(27.7%)보다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보임.

표 4-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도

구분	잘 알고 있음	들어 봤음	잘 모르겠음	관심 없음	계
응답(명)	26	39	28	1	94
빈도(%)	27.7	41.5	29.8	1.1	100.0

- 현재 계약 중인 업체가 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44.7%가 ‘운영 중’이라고 답변함. ‘농가 협의회 조직 중’이라는 답변은 10.6%, ‘계획 없음’이라는 답변은 18.1%에 달했음. 한편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6.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표 4-19. 사육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부

구분	운영 중	조직 중	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
응답(명)	42	10	17	25	94
빈도(%)	44.7	10.6	18.1	26.6	100.0

-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오’라는 답변이 38.3%로 ‘그렇다’는 답변(33.0%)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8.7%로 나타남.

표 4-20.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계약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계
응답(명)	31	36	27	94
빈도(%)	33.0	38.3	28.7	100.0

- 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에 대한 육계농가들의 정보와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협회 및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1.2. 농가의 만족도 현황

- <표 4-21>은 과거 정민국 외(2010)와의 비교를 위해 육계 계열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농가들이 느낀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평가를 지수화한 결과임. 표에 제시된 총 12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점수는 52점이며, 60점 이상인 항목은 ‘사육비 정산기간 준수’의 1개 항목뿐임.
 - ‘사료 품질’, ‘입추 간격’, ‘병아리 품질’, ‘평가방식’,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 등의 항목은 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임.
- 만족도 평균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질병 방역 및 소독 지원’, ‘분쟁발생시 해결 방식’, ‘페널티 수준’, ‘인센티브 수준’, ‘사육계약서의 공평성’, ‘계열업체 컨설팅 수준’ 등이었음.
 - ‘질병 방역 및 소독 지원’ 항목은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반영한 항목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는데, 설문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표 4-21. 계열업체와의 계약 중 항목별 만족도

항목	만족도 지수 (100 기준)	응답자 수(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사육비 정산기간 준수 여부	60.4	5	21	43	19	5
사료 품질	59.6	3	16	56	12	6
입추간격	58.3	2	24	37	24	6
병아리 품질	53.3	0	10	49	27	7
평가방식	53.2	2	12	42	18	14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	52.1	0	11	42	29	9
계열업체 경영 컨설팅 수준	51.7	0	11	40	28	10
사육계약서의 공평성	50.7	0	8	44	29	11
인센티브 수준	48.6	0	6	37	34	11
페널티 수준	47.2	0	6	35	29	16
분쟁발생 시 해결방식	45.4	0	7	26	44	15
질병 방역 및 소독 지원	44.0	0	6	31	27	25

주: 만족도 지수는 만족도 수준별로 각 1~5점의 점수를 차등 부여한 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임.

- <표 4-21>의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인센티브 수준’과 ‘페널티 수준’에 대한 만족도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임. 이는 그동안 지속된 평가방식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각종 논쟁과 관련 보도 등을 통해 평가방식의 상대적인 장·단점 문제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즉 평가방식 자체보다는 평가 구성내용인 인센티브와 페널티 항목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결과로 보임.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규칙이 새롭게 도입된 이후 계열화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만족도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거 정민국 외(2010)의 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설문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표 4-22>와 같음.

표 4-22. 계열업체와의 계약 중 항목별 만족도

항목	만족도 지수(100 기준)		
	정민국 외(2010)	본 연구	증감률
병아리 품질	40.4	53.3	31.9%
사육계약서의 공정성	41.5	50.7	22.2%
분쟁발생 시 해결방식	37.9	45.4	19.8%
사료 품질	51.5	59.6	15.7%
사육비 정산기간 준수 여부	51.7	60.4	16.8%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	45.7	52.1	14.0%
평가방식	49.5	53.2	7.5%
입추간격	59.7	58.3	-2.3%
계열업체 경영 컨설팅 수준	56.0	51.7	-7.7%
질병 방역 및 소독 지원	-	44.0	-
인센티브 수준	-	48.6	-
페널티 수준	-	47.2	-
계열농가 간 정보교환 및 협력 관계	56.4	-	-
평균	49.0	52.0	6.2%

주: 정민국 외(2010)와 ‘본 연구’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계열화 진행에 따라 업계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항목에 차이를 두었기 때문임.

- <표 4-22>에 따르면 두 가지 연구에 있어 서로 일치하는 9개 항목 중 7개 항목의 만족도 지수가 과거에 비해 상승했으며, 그 결과 전체적인 만족도 평균 점수도 6.2% 상승했음.
 -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반면 ‘입추 간격’과 ‘계열업체 경영 컨설팅 수준’에 대한 항목만 만족도가 하락함.
- 비교 항목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은 ‘병아리 품질’ 항목으로 과거에 비해 31.9% 증가하였음. 이어서 ‘사육계약서의 공정성’(22.2%), ‘분쟁발생 시 해결방식’(19.8%) 등 항목의 공정성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 특히 큰 증가세를 보인 ‘사육계약서의 공정성’과 ‘분쟁발생 시 해결방식’ 항목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도입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항목으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계약 증가와 사육농가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분쟁발생 시 해결방식’ 항목은 과거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과거 연구와 현재 연구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선택되어, 앞으로 계열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됨.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반수 이상인 58.2%는 ‘변화가 없다’라고 중립적으로 응답함<표 4-23>.
 - ‘매우 그렇다·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16.5%인 반면 ‘아니다·매우 아니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25.3%로 부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23. 법률 도입 이후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변화 없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응답(명)	1	14	53	13	10	91
빈도(%)	1.1	15.4	58.2	14.3	11.0	100.0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계열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표준 계약서를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0.0%는 ‘변화가 없다’라고 중립적으로 응답함<표 4-24>.
 - ‘매우 그렇다·그렇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27.2%인 반면 ‘아니다·매우 아니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22.8%로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더 높았음.

표 4-24. 법률 도입 이후 표준계약서 적용 증가 여부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변화 없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응답(명)	0	25	46	14	7	92
빈도(%)	0.0	27.2	50.0	15.2	7.6	100.0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에 계열업체의 행동변화를 서로 비교한 후 긍정적인 변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4-25>와 같음.
 - 모든 조사 항목에서 ‘변화했다’는 답변보다는 ‘변화 없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 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사육비 정산기간 준수’, ‘사료 품질’, ‘병아리 품질’, ‘입추 간격’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25. 법률 도입 이전과 이후 변화 정도 비교

단위: 명

항목	법률 시행 이후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 정도가				
	매우 크다	크다	변화 없으나 기대함	변화도 기대도 없음	합계
농가와의 의사소통 노력	1	8	50	30	89
사료 품질	0	16	59	17	92
병아리 품질	0	12	56	24	92
입추간격	0	14	56	19	89
계열업체 경영 컨설팅 수준	1	3	57	28	89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	1	10	61	18	90
사육비 정산기간 준수 여부	2	17	54	17	90
사육계약서 내용의 공평성	1	5	61	24	91
인센티브 수준	0	2	62	24	88
페널티 수준	1	5	54	28	88
질병 방역 및 소독 지원	0	5	51	33	89

3.2. 제도 개선 효과

3.2.1. 표준계약서 활용 증가

- 2014년 9월~10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시·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표준계약서 활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표준계약서 활용 육계와 오리농가 비율은 2014년 4월 19.8%에서 10월에는 57.8%(육계는 57.2%)로 크게 개선됨.
- 구체적으로는 1,823농가(육계 1,565+종계 258) 중 1,044 농가가 표준계약서

를 활용해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됨.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체 52개 업체 중 21.2%인 11개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하림, 올품, 동우와 같은 규모화된 계열화사업자들도 2014년 12월부터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중임.

3.2.2.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도입 및 운영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서로 간에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농가협의회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 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음...”
- 축산계열화법 시행 이후 규모가 큰 계열화사업체 중심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임. 정부는 계약사육농가협의회 설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해서 협의회 설립을 유도하고 있음.
 - 2013년 12월 기준 52개 육계계열화사업자 중 30.8%인 16개 사업체에서 운영 중임.

3.2.3.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도입 및 운영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단위 축산단체에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⁴

- 농가협의회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협의
 - 계열화사업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는 축종별로 설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됨. 계열화사업자와 계약 농가 간의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협의를 위해 해당 안건을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함.⁵

3.2.4.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및 운영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 법 제8조에 따른 사육경비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이 외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계열화사업 참여자가 계열화협회의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열화협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함. 이후 6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자에게 수락 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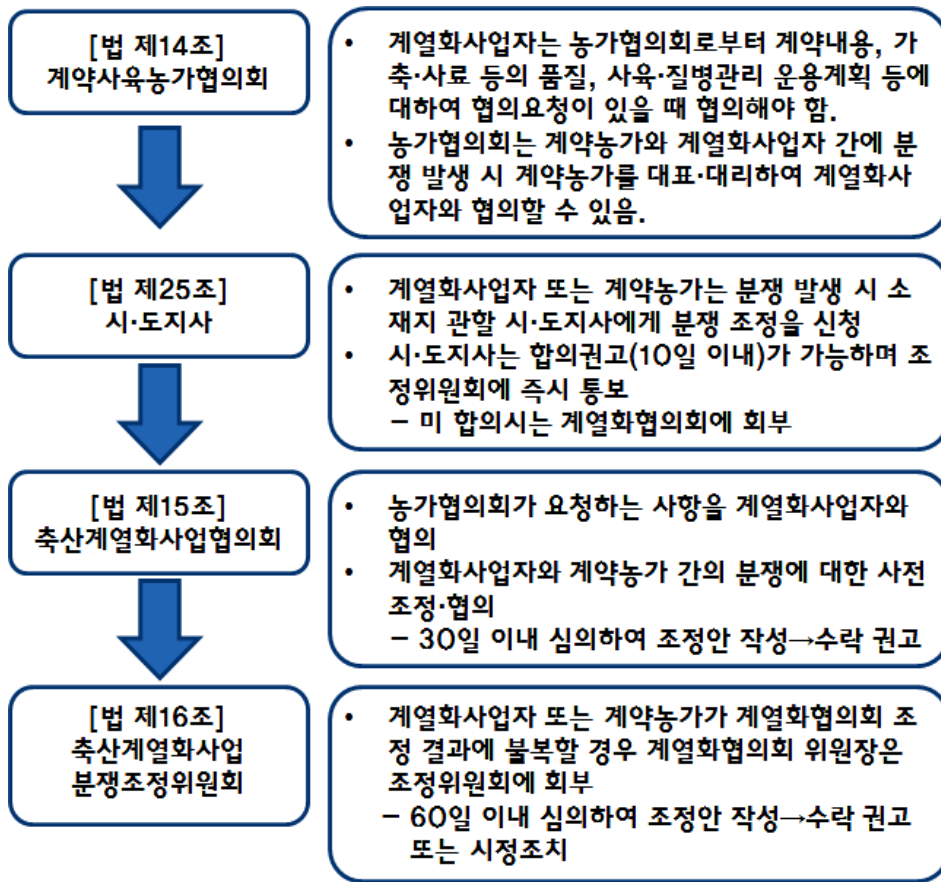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초 구성일은 2013년 4월 22일이었음.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은 2013년 1건, 2014년 0건임.

그림 4-1.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 절차



- 2013년 사례는 위탁사육수수료 인하에 대한 계약서 변경과 관련한 계약사육농가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것임. 충청남도의 합의 권고와 육계계열화협의회 중재 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중재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결렬되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됨.

- 이에 대해 2013년 12월 11일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검토 후 종결처리하고 당사들에게 결과를 통보함.
- 또한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유사사례 수집 및 활용함.

3.2.5. 계열화업체 불공정행위 단속 실시

- 계열화사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농가 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농가협의회 구성·운영 여부, 자조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법 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조사 이외에도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대한양돈협회 등 분쟁조정 기구인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축산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연중 수시 조사가 가능함.
- 가장 최근인 2014년 9~10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단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5개소(돼지 17개소, 닭 49개소, 오리 39개소) 조사업체 중 2건(경기 1건, 경남 1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됨.
 - 불공정행위 적발 내용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축 출하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사육경비를 지급해야 하나, 기한 내에 미지급한 사례임.
 - 해당업체에 사육비 지급하도록 개선 명령을 보냈으나 1개 업체(청정계)는 부도 처리됨.

제 5 장

계열화사업 발전 과제

1. 발전을 위한 기본 과제

-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의 제4장에서 정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임.
 - 이를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의 참여 주체인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실시함.
- 현재 위탁사육을 실행 중인 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표준계약서의 빠른 보급과 적용 확대 노력’이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음. 뒤를 이어 ‘계열업체 불공정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사육농가협회의 구성 및 운영 강화’ 등의 항목들이 중요한 것으로 선택되었음<표 5-1>.
- 반면 ‘닭고기 제품 수출 확대’, ‘닭고기 가격고시 시스템 정비’, ‘AI 등 가축 질병 예방 강화’ 및 ‘기타’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5-1>.

- 기타 항목으로는 ‘농가교육 강화’, ‘병아리와 사료 품질 강화’, ‘사육 수수료 인상’, ‘쿼터제 도입’ 등의 의견들이 있었음.
- <표 5-1>의 조사결과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 관계가 서로 대등하고 신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함.
- 따라서 축산계열화사업과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관련 법규 내용의 적절성과 유효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한 과제임.

표 5-1.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 조사 결과

항목	빈도(명)	비율(%)
표준계약서의 빠른 보급과 적용 확대 노력	40	14.3
계열업체 불공정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39	13.9
사육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강화	36	12.9
축사시설현대화 제도 지속 또는 확대	24	8.6
계열업체 간의 과열경쟁 자제 및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 강화	22	7.9
사육농가 중심의 품목협동조합 조직 및 육성	22	7.9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20	7.1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20	7.1
가공식품 개발 등 소비자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18	6.4
AI 등 가축질병 예방 강화	12	4.3
닭고기 제품 수출 확대	10	3.6
현행 닭고기 가격고시(설정) 시스템 정비	9	3.2
기타	8	2.9
합계	280	100.0

주: 복수 응답을 반영한 조사결과임.

- 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신뢰 구축의 중요성은 정민국 외(2010)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를 위한 갈등조정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생산자 품목조합의 시장 참여도가 매우 미약한 육계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계열업체와 농가 간의 관계 재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임.
- 김정주 외(2011)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계열화의 핵심적인 3가지 목표를, i) 공급체인의 각 단계에서 획득한 각종 정보를 업체 내부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에게 용이하게 전달하는 것, ii) 공급체인 참여자들이 각 단계에서의 이익극대화보다는 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iii) 공급체인 내에서의 거래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으로 정리함.
- 특히 김정주 외(2011)는 이익의 분배와 관련해서 계열화주체와 계약농가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미국 육계계약 농민연합회(National Poultry Growers Association)의 활동사례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농업 공정거래법(Agricultural Fair Practice Act) 등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강조함.
- 문제는 계열업체와 계약농가 사이의 상호관계는 법적인 계약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계약거래보다는 ‘암묵적인’ 계약거래 문화가 이루어지던 문화가 남아있음. 따라서 법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고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은 농가가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음(김정주 외 2011).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계열화와 계약거래 관련 법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법률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함.

-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축산과 농촌 현실에서 계열화사업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함. 위탁농가와외의 관계 외에 계열화사업의 현재 문제점 중 하나로 외형적 성장에만 머무르고 있는 계열업체의 성장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정민국 외(2010)는 “...소비자 요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생산요소 품질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다양한 육가공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함.

2. 발전 방안 검토

2.1.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

2.1.1. 사육농가협의회 보완

- 2013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앞 장의 <그림 4-1>과 같이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의 최전선에 위치하는 계약 사육농가협의회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농가협의회 구성에 계열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주장과 사육농가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육농가협의회 지위를 계열업체가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협상 상대자로 대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함.
- 계열화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육농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농가 차원에서

의 구심점과 인식이 부족하고, 계열화사업자가 농가협의회를 대등한 대화상대로 보지 않고 기업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점 외에 농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문제 등이 겹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조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계열화사업자의 농가협회에 대해서는 자조금을 활용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변경함.
 - 매분기 1회 이상 축종별 농가협회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부 및 관련 단체 등이 동참하여 농가협회 운영 실태와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 농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함. 먼저 계열주체 주관으로 구성된 농가협회의 운영과 농가 자율로 구성된 농가협회의 활동이 서로 대립할 경우 농가 자율 구성 농가협회의 활동이 우선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가협회의 구성을 위한 계열농가 정보 수집 문제, 농가협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계열농가의 참여 비율 문제, 농가협회의 자율성 판단 근거,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주소지에 대한 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문제에 있어 명확하고 타당한 규정과 근거가 필요함.

2.1.2. 표준계약서 이용 확대

-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약 57%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소규모 영세 계열사의 사용률이 저조함. 따라서 표준계약서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적용이 필요함.
 - 정부는 2015년부터 표준계약서 미사용 계열사는 계열화사업자 지원 대

상에서 제외하고, 모범사업자 선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기본요건으로 설정함.

- 매년 4월마다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규정 도입 방안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 필요함.

2.1.3. 모범사업자 육성 확대

- 현재 농가와 상생협력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열사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자금 지원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더욱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모범사업자에 대해 0~1% 금리로 업체당 30억 원 수준의 인센티브 자금 지원
- 모범사업자 선정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페널티와 인센티브 부여 기준과 내용을 대폭 강화하여 계열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모범사업자로 선정되고 그 신분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2. 새로운 제도 도입과 개선 검토

- 앞서 지적했듯이 농가와 계열사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나 과연 실질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농가협의회라는 조직이 각 계열주체별로, 지역별로 별도 구성되고 활동하면서 계열화사업자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함.

2.2.1. 한국형 P&SP 도입 검토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협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 등을 분명히 하고, 축산계열화사업협회의 조직이 농가협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즉 하나의 대안으로 축산계열화사업협회의 조직과 활동 내용을 미국 농무성 산하의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P&SP)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을 단속 및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자율적인 분쟁조절과 화합을 유도하기에는 두 주체 간의 신뢰도 형성 수준이 매우 낮으며,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 수준도 불공정한 ‘정보 비대칭’ 상황임. 따라서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를 바탕으로 현안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강제성 있는 판단을 내리고, 각종 유용한 정보를 수집·전파할 수 있는 공적기관의 필요성이 있음.
- 한국형 P&SP의 활동 가능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임.
 - 농가협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감독, 법률서비스 제공
 -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계약서 내용 공정성 판단
 - 계열화사업자의 평가방식에 대한 농가의 이의 접수 및 판단
 - 계열화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재정건전성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해당 산업의 현황 및 계열화 정도, 독과점 여부 판단
 - 각종 불공정행위 단속 및 고발
 - 계열화 관련 입법 지원
 - 연차 정기보고서 발행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 제공
- 정부 산하 공적조직 또는 공공기관의 신규도입은 그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그러나 앞으로 한국 축산업에서 계열화의 진행이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고 일반 농가의 권익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의 도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축산업에서의 계열화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경종작물 생산 농업인들과 식품기업들 간의 계약거래(포전매매 등)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

표 5-2.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P&SP) 활동 내용 요약

- Packers and Stockyards Act(P&S Act)에 의해 운영되는 The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P&SP)은 미국 농무성 산하 GIPSA(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의 관리를 받는 본부와 3개의 지역사무소(동부, 중서부, 서부 지역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 P&SP 본부는 법률(P&S Act)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규제) 기관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기타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가축·사료 등의 무게 측정 정확성 여부
 - 보호계좌(custodial accounts) 및 신속한 대금 지불 여부에 대한 감사
 - 물품 조달 판매업에 대한 검토
 - P&S Act 아래 영업을 하는 판매업자, 판매인, 패커 등의 등록업무
 - 생산자의 채권 및 신탁에 대한 민원 접수 지원
 - 채권 및 신탁 관련 민원에 대한 분석
 - 신규 판매업자, 패커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공공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장 및 개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활동
- 지역 단위에서 P&SP의 역할도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P&S Act에서 규정하는 상행위 규정 준수 여부와 채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조사로 요약할 수 있음.

- P&SP는 자신들의 다양한 업무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기재하고 있는데,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의 경우 P&SP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P&S Act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함. 이를 위한 평가지표는 5가지로 구성되는데, 1) 육계 계약에 있어 재무요건 준수 여부, 2) 보호계좌(custodial accounts) 재무적 검토, 3) 무작위로 추출된 기업의 대금 즉시변제 여부에 대한 재무적 검토, 4) 시장, 판매인, 육계 계열업자의 정산과정에서 공정한 측정 여부, 5) 연간 천 두 이상 구매하는 도축·가공장에서 사용하는 지육 평가도구나 평가과정에 대한 검사 등임.
- P&SP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내용 중 효율성 측정(Efficiency measurement)은 P&SP가 위법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완료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바탕으로 함. P&SP의 조사는 P&S Act 위배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크게 1) 경쟁, 2) 재정, 3) 거래위반의 3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이루어짐.
- P&S Act의 section 4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와 돼지 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평가내용은 1) 규제 대상인 산업의 일반 상황(예를 들어 기업 수, 시장집중도 등), 2) 시장 참여자들의 변화하는 사업 내용(예를 들어 가격설정 정책 등), 3) P&S Act 규제 내용과 관련한 업체들의 다양한 이슈와 행태 및 이에 대한 P&SP의 대응 등임.

2.2.2. 계열화사업자 부도 발생 시 농가 보호 방안 검토

- 육계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소 계열화사업체의 재무상태가 열악해지고 그 결과 일부 업체가 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함.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계약농가가 사육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없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계협회 등은 업체 부도발생 시 계약 사육농가의 사육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과 현재 입추 중인 닭의 사료 공급, 출하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원종계 쿼터제가 아닌 농장 단위의 종계 쿼터제 전환도 요구하고 있음.
 - 부도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받지 못한 사육수수료 전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어음 계약 등 사육수수료 미지급 문제 해결책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The Packers and Stockyards Act는 대형 패커와 가축 판매자(농가)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금융피해 문제 특히, 파산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따른 패커들의 농가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 가축 판매자(농가)는 무조건 판매금액 전액을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미국의 경우도 1976년의 법률 수정 이전까지는 가축 판매자(농가)와 패커 사이의 거래는 대부분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상법에 의해 가축판매자보다 더 우선한 다른 채무자들에 의해 가축판매자의 재산상 권리가 제한되었음.⁷

- 우리나라도 계열화사업자의 부도 발생시 채무변제 우선 순위 설정에서 농가의 사육수수료가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함.
 - 특히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의 계약 체결에 앞서 계열업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농가에 지불해야 하는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우선적 담보 설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관련 업무를 미국의 P&SP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⁷ Binford, Jason and John Kane. "Farmer favoritism: Statutory Protections for Creditors in Agricultural Bankruptcy Cases." Texas Tech Law Review. Vol. 46: 377-422.

2.3. 기타 사항

2.3.1. 계열사의 가축질병 방역 책임 강화

- 제4장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농가들은 계열업체의 ‘질병 방역 및 소독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음<표 4-21, 4-25>.
- 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계약농가에게 대부분 일임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열업체의 책임 있는 가축질병 방역 참여가 필요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염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질병신고, 소독설비 및 실시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임. 이는 방역 관련한 농가관리 책임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열업체의 관리·감독에 있는 것임을 규정하는 것임.
 - 업체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예정임.
 - 특히 방역 및 소독활동과 관련한 각종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한 비용발생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함.
- 또한 우수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업체 인센티브 지원과 동시에 운영실태가 열악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단, 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시 농가의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계열업체가 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임.

2.3.2. 계열화사업 평가지표 개선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축산계열화 비율을 이용하고 있음. 즉 축산계열화 비율(=축산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총 도축두수)을 계산한 후 이것이 당해 연도의 목표 대비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문제는 생산자 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축산계열화의 양적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정부의 정책목표는 그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집행에 대한 저항이 예상됨.
 - 또한 현재 축산계열화 진행 정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적 확대의 달성도 쉽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좀 더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한 새로운 계열화사업 평가지표 발굴이 필요함.
- 계열화사업의 도입 배경에는 생산성 증가와 계약농가의 소득안정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으므로, 계열화사업 평가지표로 육계 생산성 향상 지표와 계약농가 소득 안정성(또는 농가소득 증대)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계열화사업을 통해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한다면 수급안정에의 기여 정도의 지표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부록

육계농가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병준입니다.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 검토를 위해 농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우리나라 축산계열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는 절대로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히 생각하신 후, 귀하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병준

□ 기본사항

이름(또는 농장명)			
연락처			
농장위치	도	시·군	동·면
사육경력	()년	연령	()세

※ 해당 사항을 직접 기입하시거나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이름(또는 농장명)과 연락처는 설문조사 참가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I. 시설수준

(문 1) 귀하께서 운영 중인 계사에 대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사 총 면적은 () 평이며 총 () 개 동이 있음.
- 주된 계사형태는 () 임.
- ① 환경조절식(무창계사) ② 환경개방식(유창계사)
- ③ 채래식(비닐하우스 등) ④ 기타(직접 기입)

(문 2) 최근에 시설현대화자금을 이용해서 계사 건물을 새롭게 개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해당되는 내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 (문 2-1)로 이동해 주세요.
- 아니오 () ☞ (문 3)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 2-1) 시설현대화자금을 이용한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시설 개선 연도	()년
개선 면적	()평
자부담액	총 ()만 원

(문 3) 시설현대화자금을 이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시설 개선 공사 횟수 및 투자금액은 모두 얼마인가요?

구분	내용
시설 개선 횟수	()회
개선 면적	총 ()평
총 투자금액	총 ()만 원

※ 시설현대화자금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경영 형태

(문 4) 귀하 농장의 1회 최대 사육 가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수

(문 5) 계열업체와 육계 사육계약 거래를 제일 처음 시작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문 6) 농장 운영은 현재 주로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 ① 일반 사육 ② 계약 사육
③ 일반+계약 사육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문 7) 현재 계약 사육 중이라면 어떤 계열업체와 몇 개월째 계약 중입니까?

() 업체와 () 개월째 계약 중

(문 8) 농장입구와 계사입구에 소독조(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당 칸에 ○ 표시하거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있음	일부 있음	없음	기타(구체적으로)
농장 입구				
계사 입구				

(문 9) 귀하께서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가축공제(자부담률 ___%) ② 화재보험
③ 가축공제+화재보험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⑤ 없다

Ⅲ. 경영 내용

(문 10) 2014년 한 해 동안의 총 출하횟수와 총 출하마릿수는 얼마였습니까?

총 ()회 , 총 () 마리

(문 11) 2014년 기준 1회 출하 시 사육비 정산 평균금액은 얼마입니까?

1회 평균 () 만 원

(문 12) 귀하의 경우 작년(2014년) 기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의 유·무 여부를 표시하시고 육계 출하 시 1회 평균 발생한 추가 비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무 여부	1회 평균 비용
사료비	있음(), 없음()	원
각종 첨가제 및 항생제 대체물질	있음(), 없음()	원
동물약품비용	있음(), 없음()	원
소독비용	있음(), 없음()	원
분뇨처리비	있음(), 없음()	원
깔짚·툽밥비	있음(), 없음()	원
수도광열비	있음(), 없음()	원
인건비(자가노임은 제외)	있음(), 없음()	원
기계장비비용(작업 차량 및 기구 유지비용)	있음(), 없음()	원
기타 비용(구체적으로 기입:)	있음(), 없음()	원
기타 비용(구체적으로 기입:)	있음(), 없음()	원
합계		총 원

(문 13) 작년(2014년) 기준 1회 출하 시 사육비 정산 평균금액과 귀하가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고려할 때 귀하께서 1회 출하 시 얻을 수 있는 평균 실소득은 얼마입니까?

1회 평균 () 만 원

IV. 계약 일반

(문 14) 귀하께서 거래하는 계열업체의 평가방식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절대평가 ② 상대평가 ③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문 15) 귀하는 계열업체와 계약거래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몇 번 정도 계열업체를 바꾸셨습니까?

총 (_____) 회

(문 16) 그동안 계열업체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중요도 순으로 해당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순위: _____
 ② 2순위: _____
 ③ 3순위: _____

<보 기>

- | | |
|------------------------|----------------------|
| ① 사육비 정산이 제때 잘 안 이루어짐 | ② 사육비 정산금액이 너무 낮아서 |
| ③ 평가방식이 불합리해서 | ④ 병아리 입추간격이 안 지켜져서 |
| ⑤ 사료품질이 안 좋아서 | ⑥ 병아리 품질이 안 좋아서 |
| ⑦ 업체의 부도가능성이 있어서 | ⑧ 기존 업체가 부도 등으로 폐업해서 |
| ⑨ 이웃의 권유로 | ⑩ 다른 업체의 계약 권유로 |
| ⑪ 사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이 부실해서 | ⑫ 농가입장을 무시하고 강압적이어서 |
| ⑬ 농가협의회 구성을 방해해서 | ⑭ 표준계약서 적용을 안 해서 |
| ⑮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불합리해서 | ⑯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문 17) 귀하는 향후 현재의 계열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예() ☞ 가장 큰 이유를 위의 보기에서 찾아서 적어주세요()
 ② 아니오()

V. 계열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

※ 2013년 2월부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계열업체가 공급하는 사료와 병아리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계열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 18) 귀하는 위에서 언급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음() ② 들어 봤음()
 ③ 잘 모르겠음() ④ 관심 없음()

(문 19) 귀하와 계약한 업체는 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농가협의회 운영 중() ② 농가협의회 조직 중(),
 ③ 계획 없음() ④ 잘 모르겠음()

(문 20) 귀하는 현재 계열업체와 표준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을 맺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문 21) 그동안 계열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아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질문별로 해당되는 내용에 ○ 표시를 해주세요.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가방식(절대 또는 상대평가)					
사료 품질					
병아리 품질					
입추간격					

계열업체 경영 컨설팅 수준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					
사육비 정산기간 준수 여부					
사육계약서의 공정성					
분쟁발생 시 해결방식					
인센티브 수준					
페널티 수준					
질병 방역 및 소득 지원					

VI. 계열화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

(문 22) 2013년 2월부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계열업체의 불공정행위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변화 없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3) 2013년 2월부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계열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을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변화 없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단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4)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 계열업체의 행동변화를 서로 비교한 후 해당되는 항목에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법률 시행이후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 정도가			
	매우 크다	크다	변화 없으나 기대함	변화 없고 기대도 없음
농가와의 의사소통 노력				
사료 품질				
병아리 품질				
입추간격				
계열업체 경영 컨설팅 수준				
사육비 정산금액 수준				
사육비 정산기간 준수 여부				
사육계약서 내용의 공평성				

인센티브 수준				
페널티 수준				
질병 방역 및 소득 지원				

(문 25) 앞으로 육계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아래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별로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1순위: _____

② 2순위: _____

③ 3순위: _____

<보 기>

1. 사육농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강화
2. AI 등 가축질병 예방 강화
3. 표준계약서의 빠른 보급과 적용 확대 노력
4.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5. 사육농가 중심의 품목협동조합 조직 및 육성
6. 축사시설현대화 제도 지속 또는 확대
7.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8. 닭고기 제품 수출 확대
9. 현행 닭고기 가격고시(설정) 시스템 정비
10. 계열업체 불공정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11. 계열업체 간의 과열경쟁 자제 및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 강화
12. 가공식품 개발 등 소비자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13.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참고 문헌

- 강병규·안상돈. 2014. 『육계계열화 사업 참여농가의 사육성과 평가 유형별 비교』. NHERI 리포트 제242호.
- 김정주·강병규·김종욱·김연정. 2011. 『국내 육계계열화사업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대한양계협회.
- 농림축산검역본부. 매분기. 『도축실적』. <<http://www.qia.go.kr>>.
- 농림축산식품부. 매년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농협중앙회. 매년도. 『축산물가격 및 수급 자료』.
- 대한양계협회. 2015. 내부자료.
- 박영인. 1994. 『한국 농업의 통합경영』. 홍익제.
- 이명기·이형우·김현중·정민국·전상근. 2011. “육계계열화농가의 생산성 분포와 평가방식 분석.” 『농촌경제』 제34권 제1호: 1-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민국·이명기·김현중·이형우. 2010. 『축산계열화의 평가와 발전 방안』. R6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축산신문』. 2001년 11월 28일자 기사. “사육계약서 불공정 68.8%.”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6763>>.
- 『축산신문』. 2010년 5월 19일자 기사. “육계농가, 계열화사업 재정립 최우선 과제.”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59193>>.
- 통계청. 매년도. 『축산물 생산비』.
- _____. 매년도. 『가축동향조사』.
- 한국계육협회. 2002. 『한국계육산업발전사』.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0. 『육계계열화사업 발전 방향』. 가금수급안정위원회.
- Binford, Jason and John Kane. “Farmer favoritism: Statutory Protections for Creditors in Agricultural Bankruptcy Cases.” *Texas Tech Law Review*. vol. 46: 377-422.
- USDA. 2014. *2013 Annual Report: 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 <<http://www.gipsa.usda.gov>>.

정책연구보고 P202

축산계열화사업 성과와 과제: 육계산업을 중심으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2.

발 행 2015. 2.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이호문화사

02-2274-1491~2 <http://www.ihoprinting.co.kr>

ISBN 978-89-6013-740-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